

중국의 쌀 수입관련 제도 조사

자료작성 : 베이징aT센터

1. 중국의 쌀 수입현황

- 중국은 '02년 WTO 가입 이래 매년 소비량의 4% 내외를 수입
 - * 국가발전개혁위원회(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)에서 수입쿼터 결정
 - * 쿼터는 매년 532만 톤 내외로 결정되며, 계약서 등 관련서류 준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쿼터 신청
 - * 쿼터 외 물량도 수입이 가능하나 고관세(쿼터 내 1%, 쿼터 외 65%)이며, 12년 쿼터 내·외 전체 수입물량은 약 236.9만톤
- 13년 쌀 수입쿼터 물량 : 532만톤 (장립종 266, 중단립종 266)

2. 수입 전제조건

-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'중국질검총국(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)'과의 검역 협상을 통해 사전 비준을 받아야 함
 - * <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> 및 그 실시조례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의 검사검역을 받아 쌀 수입자격이 허가된 국가 리스트를 공고함 (통상 중국 질검총국과 수출국 농업관련 정부부서에서 협상)
 - 비준 필요품목 : 현미, 쌀, 찰쌀, 기타 쌀
- 비준국가 : 태국, 우루과이, 파키스탄, 베트남, 일본, 캄보디아, 인도, 대만 등

3. 쌀 수출입 주체

- 수출 : 中糧(COFCO), 길림성양유공사 등
- 수입 : 국영기업체(中糧 등)와 민간업체가 50:50 수입
 - * 수입쿼터 신청자격 (장립종과 중단립종은 구별하여 신청)
 - 국영무역기업, 국가비축기능 보유 중앙기업, 12년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, 양식도소매자격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액 1억위엔 이상의 곡물 관련 회사, 연간 곡물 수출액이 2,500만불 이상의 무역회사 등
 - * 13년 수입쿼터물량은 12년 11월 30일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청, 13년 1월 1일 이전에 최종결정